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29
----------	------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16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16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태웅)

가. 제안 이유

- 1)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관련법령
 - (공동)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주요 사업

- 자치구센터·풀뿌리단체 등 지역단위 자원봉사 역량 제고
 - 자치구센터 지원 : 지역단위 소모임 육성·연계 강화, 시·구 공동캠페인 확대 등
 - 지역활동 역량강화 : 동 자원봉사거점 시범운영 지원, 자원봉사상담가 및 아파트봉사단 재교육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 수요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관리자교육, 풀뿌리 및 시민리더 성장학교
- 소통·공유·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 활성화
 - 온라인 플랫폼 : 일상 속 작은 실천과 변화를 이끄는 자원봉사활동 콘텐츠 개발 및 연계
 - 민간자원연계 : 공공기관·기업·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물적자원 및 활동지원
 - 국내·외 자원봉사 이슈개발 및 지역밀착형 재난안전 활동

3) 출자·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확산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제18조 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14.5.28.개정, '16회계 연도부터 적용) 되어,¹⁾ 2017년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동 센터는 관련법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조²⁾)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시·구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광역지역 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설립 등 현황 및 사업 실적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인력은 23명이며, 2016년 출연금은 25억 2천 4백만원 규모이나, 본 동의안과 관련되는 2017연도 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830	2,271	2,282	2,447	2,524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제4조(설립 및 사업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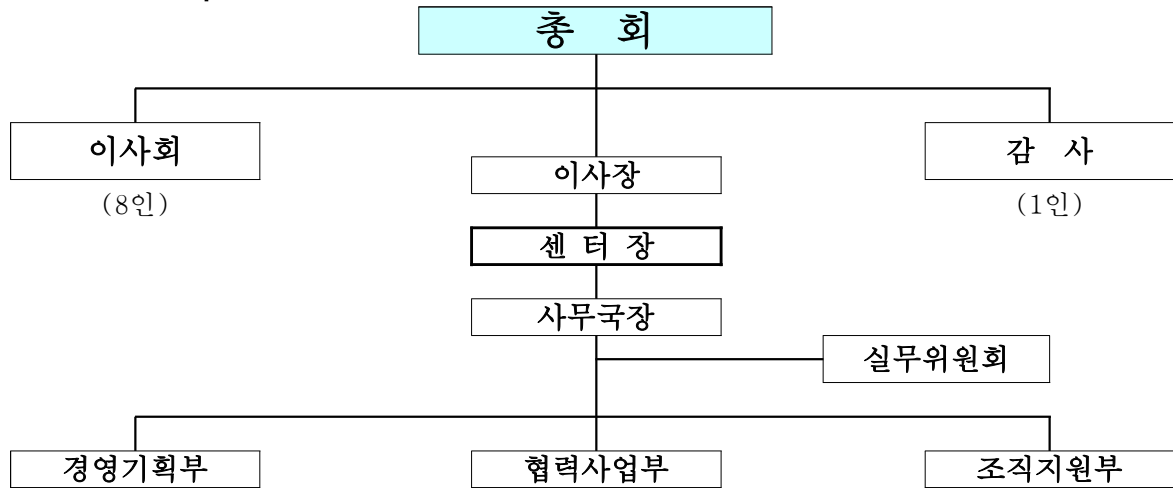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현황>

설립 개요

- 기관명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설립형태 : 사단법인(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1(남산빌딩 302호)
- 설립일 : 2006. 1. 18.

조직 및 인력

○ 조직



○ 인력

(2016.07.31 현재)

구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대리	주임
현원	23	1	1	3	5	6	7

※ 정원 외 인력 11명 별도운영 : 동행프로젝트 7명(서울사수탁사업), 교육/전산 코디네이터 2명, 전산/콜센터 기능직 2명

○ 2016년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지역 내 자원봉사 인프라를 연계하여
-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 캠프를 내실화하고, 상담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 자원봉사 거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적으로 11개동을 선정, 각 2,700천원씩 총 2천9백 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거점 운영모델 연구 사업과 함께 진행하여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구센터·시민·풀뿌리 단체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 자치구 센터장 권역별 회의(5회), 실무자 연합 워크숍(1회), 지역단위 주민 소모임 활성화 지원(21개 자치구, 109개 단체), 서울 청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선발·육성(25명), 동 자원봉사 거점 시범운영 지원(11개소), 교육지원(5회), 풀뿌리 주민조직 및 자생단체의 리더 교육(106명), 교육공모(11건), 역량기반 관리자 교육과정 설계(6월), 신입 및 중간관리자 교육(64명), 소모임 활성화 및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 연구 착수(2건)

-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V세상 방문자수(1일평균 2,828명, 연인원 588,202명), 활동 콘텐츠 등록·연계(140건) 및 신규 단체 개발(94개), 정보 콘텐츠 공유(229건, UN 지속가능개발 목표 SDGs 안내서 등), 시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모션(3회, 18,350명), 기획보도(4회), 언론보도(188건), E-뉴스레터(738,107명), 기업자원봉사 설명회(31개 기업, 40명), 기업프로그램 공유(137개), 공공서비스 자원봉사 지원(684명), 공공서비스 수요처 관리자 교육(84명)

〈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 〉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지원
3.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이하 "자원봉사수요자"라 한다)의 협력·지원
4.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5.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6.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8.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

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 필요성

- 자원봉사는 민간의 힘을 빌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빈곤, 고령자, 아동양육 등의 문제를 민간의 힘으로 자조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가진 민간의 자원봉사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광역지역 자원봉사센터로, 서울시 전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음.
 -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봉사자를 연결하고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중앙부처와 타 시·도의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 정보교환, 자원봉사 정보망 구축 등의 역할수행이 본 센터의 존립근거가 된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운용재원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법령개정 협의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또한, 서울시의 자원봉사참여율³⁾이 지속적으로 하락(2011년 23% ⇒ 2015년 12.3%)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자원봉사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011년~2015년 서울시의 자원봉사참여율 현황〉

2011	분류	자원봉사 참여율	분야별 활동 평균 참여 횟수			
			환경보전 관련	자녀교육 관련	아동, 청소년, 노인 봉사 등 관련	기타 일반인 봉사 관련
서울시		23	1.02	0.78	1.23	2.03
성별	남자	19.6	1.28	0.38	1.11	1.8
	여자	26.4	0.83	1.07	1.32	2.2
연령구분	10대	53.1	1.34	0.33	0.79	1.93
	20대	19.9	0.61	0.3	1.19	1.75
	30대	22.4	0.7	1.71	0.91	1.14
	40대	25.2	0.72	1.27	1.24	1.79
	50대	21.6	1.1	0.25	1.92	3.12
	60대 이상	13.6	2.1	0.29	1.49	3
학력구분	중졸 이하	16.9	2.02	0.46	0.81	2.19
	고졸 이하	25.1	1.05	0.75	1.16	2.24
	대졸 이하	22.6	0.76	0.87	1.28	1.81
	대학원 이상	38.8	1.32	1.04	2.99	2.09
2012	분류	자원봉사 참여율	분야별 활동 평균 참여 횟수			
			환경보전 관련	자녀교육 관련	아동, 청소년, 노인 봉사 등 관련	기타 일반인 봉사 관련
서울시		22.7	0.59	0.55	0.74	0.63
성별	남자	19.9	0.52	0.4	0.65	0.54
	여자	25.5	0.66	0.69	0.83	0.72
연령구분	10대	59	1.56	0.12	1.84	1.58
	20대	22.4	0.53	0.37	0.76	0.63
	30대	18.9	0.46	0.65	0.58	0.47
	40대	23.2	0.57	0.85	0.74	0.59
	50대	19.2	0.48	0.54	0.74	0.64
	60대 이상	16.2	0.54	0.46	0.48	0.49
학력구분	중졸 이하	31.4	0.88	0.26	0.98	0.87
	고졸 이하	19.4	0.53	0.6	0.63	0.57
	대졸 이하	21.5	0.52	0.61	0.72	0.57
	대학원 이상	29	0.69	0.75	1.06	0.98

3) 15세이상 인구중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를 전체 인구수에서 나눈 백분율임.

2013	분류	자원봉사 참여율	분야별 활동 평균 참여 횟수			
			환경보전 관련	자녀교육 관련	기타 소외계층 관련	문화예술관련
서울시		20.3	2.68	4.5	3.44	2.6
성별	남자	19.4	2.77	4.52	3.41	2.55
	여자	21.1	2.59	4.48	3.48	2.64
연령구분	10대	52.7	1.88	2.45	2.44	2.86
	20대	19.1	2.87	5.24	3.56	2.75
	30대	17.9	2.82	4.87	3.61	2.48
	40대	20.2	2.7	5.1	3.65	2.61
	50대	18.9	3.05	5.07	3.67	2.43
	60대 이상	15.5	2.7	5.27	3.62	2.5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	2.3	3.23	2.86	2.71
	고졸 이하	18.8	2.82	4.97	3.64	2.5
	대졸 이하	18.5	2.78	5.14	3.63	2.6
	대학원 이상	18.9	2.73	4.16	3.15	2.79
2014	분류	자원봉사 참여율	분야별 활동 평균 참여 횟수			
서울시		13.4	2.94	3.89	4.33	3.9
성별	남자	10.6	3.08	3.91	4.25	3.98
	여자	16.1	2.83	3.88	4.39	3.84
연령구분	10대	43.1	2.64	2.89	2.97	2.4
	20대	12.6	2.43	5.1	3.87	3.54
	30대	12.3	2.17	3.11	3.35	5.61
	40대	13.4	2.97	4.25	5.68	3.39
	50대	10.1	3.89	5.4	5.98	5.07
	60대 이상	8.6	3.51	3.76	4.79	4.7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9	3.21	1.9	3.71	3.64
	고졸 이하	11.8	3.24	4.25	4.13	3.32
	대졸 이하	13.8	2.46	3.76	4.44	4.08
	대학원 이상	18.5	3.47	4.99	14.34	4.83
2015	분류	자원봉사 참여율	분야별 활동 평균 참여 횟수			
서울시		12.3	2.85	3.13	3.56	3.01
성별	남자	10.6	2.88	2.93	3.41	2.79
	여자	14	2.83	3.2	3.68	3.21
연령구분	10대	33	2.52	2.09	2.45	2.07
	20대	12.8	3.06	3.17	3.31	2.79
	30대	11.1	2.62	3.04	3.49	3.02
	40대	12.7	3.3	3.09	4.23	3.81
	50대	10.4	2.8	2.95	4.17	3.14
	60대 이상	8	3.06	3.89	4.03	3.9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8	2.6	2.36	2.51	2.1
	고졸 이하	11.3	3.01	3.11	3.64	2.72
	대졸 이하	11.3	2.94	3.16	3.93	3.35
	대학원 이상	16.1	2.88	2.81	5.12	3.64

※ 출처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jsp3/stat.search.js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329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확대와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주요 사업

- 자치구센터·풀뿌리단체 등 지역단위 자원봉사 역량 제고
 - 자치구센터 지원 : 지역단위 소모임 육성·연계 강화, 시·구 공동캠페인 확대 등
 - 지역활동 역량강화 : 동 자원봉사거점 시범운영 지원, 자원봉사상담가 및 아티트봉사단 재교육
 - 자원봉사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 수요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관리자교육, 풀뿌리 및 시민리더 성장학교
- 소통·공유·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 활성화
 - 온라인 플랫폼 : 일상 속 작은 실천과 변화를 이끄는 자원봉사활동 콘텐츠 개발 및 연계
 - 민간자원연계 : 공공기관·기업·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물적지원 및 활동지원
 - 국내·외 자원봉사 이슈개발 및 지역밀착형 재난안전 활동

다. 출자·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과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확산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김현정 (☎2133-5830)